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 2004. 12. 31)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

【조합 기획관리팀 제공】

I.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I. 총 칙

가. 목 적

이 총칙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 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물품의 명칭 및 분류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전호의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한하여 다음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정부물품분류표의 품명식별 번호(7단위, 소분류)
- 2) 수요처 규격
- 3)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
-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여러 품목을 군별로 묶거나 또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여러 물품을 군별로 묶어 분류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개별물품명을 별도로 명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대상조합 및 지역

- 1) 계약대상 지역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의거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의한다.
- 2) “전국조합”은 구매기관이 소재한 구역내 조합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구역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3) “지방조합”은 해당 업무구역내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당해지역에 지방조합이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합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연합회가 지정제외 등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구매기관은 해당물품을 지정 받은 지방조합 중 1개의 지방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
 - ① 2개이상의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및 구매기관의 소재지와 납품장소가 상이하여 2개 이상의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지방구매기관이 중앙기관에 구매의뢰하거나 중앙기관이 계획구매에 의하여 중앙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③ 구매기관의 업무구역내에 회원조합이 없거나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과 관련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④ 구매기관이 계약 및 납품의 안정성, 납품 품질의 균일화 등의 이유로 연합회와 직접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라.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중 “중소기업제품구매증대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마. 기타의 규정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물량배정, 수혜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II.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 138개 물품(한시지정 12개 포함)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 → 정보공개자료방 → 법령정보 → 공고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물품번호	특정규격 및 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품명	계약대상 지역	조합명
8115-050		21211	골판지상자	전 국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 · 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